

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
①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	
	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		
	(전화번호 :)		

②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③ 해당 과세연도 투자분에 대한 공제세액 (= ⑩)	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가. 투자금액 계산

⑥ 지역구분 (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여부)	⑦ 투자자산명 (⑥이 '여'인 경우만)	⑧ 투자금액 (⑥이 '여'인 경우만)
(여, 부)		
(여, 부)		
(여, 부)		
계		⑨

나. 상시근로자 수 계산

구 분	해당(직전)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												⑩ 합계	⑪ 개월수	상시 근로자수 (=⑩÷⑪)	
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			
해당 과세연도																⑫
직전 과세연도																⑬

다. 공제세액 계산

⑭ 투자금액(=⑨)	⑮ 계산비율 $\{2/100 + ((12)-(13)) \div (13) \div 5\}$	⑯ 공제한도율 3/100	⑰ 공제율 (⑮과 ⑯ 중 적은 금액)	⑱ 공제세액

④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후 투자자산을 투자 완료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의 납부세액 계산

⑲ 세액공제액 상당액	⑳ 이자상당액 계산금액	㉑ 납부 세액(⑲+㉑)

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36조 및 구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2조의 11제7항(2021.2.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신청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- "⑦ 투자자산"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7 제6호가목1) 및 2)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(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)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「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」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,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- "⑧ 투자금액"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4조제3항을 준용합니다.(매입가액 및 공사비 등 부대비용 포함)
- 나.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.5명으로 계산하되,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3조제8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.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,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.
- "⑩ 합계"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용합니다.
- "⑪ 개월수"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용합니다.
- "⑮ 계산비율" 중 1만분의 1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. (⑫-⑬) < 0 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계산합니다.